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17시 02분



목차

목차	2
진행중인 입법예고	3
「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

진행중인 입법예고

완료된 입법예고

「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4.04.12 00:00 등록자 박스민 061-659-3093 총무과 공고(입법예고)

「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4. 12. ~ 5. 2.(20일간)
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4. 5. 2.(목)까지

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게재
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총무과(☎061-659-3093)/ 공고문 참고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첨부파일

 입법예고문(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).hwp[미리보기](#)

목록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